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4. 7.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
- 도시계획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장, 부위원장" 두고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 를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
- 위원의 구성중 도의회 의원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위원중 공무원의 인원수 제한 및 위촉자를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조항 신설
- 도시과장은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변경

□ 근거법령

-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2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2 내지 제65조

□ 부 칙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도지사는 도시계획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과 여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 이외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지출장시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3.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심의배제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규정된 경미한 사항
2. 기타 타법에 규정된 심의 배제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도의회의원 및 도의 관계 실, 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④ 도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수 있다.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제14조(기능) ①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연구검토
2.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검토
3. 도시계획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분석, 평가

제15조(구성) ①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상임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 ②단장은 구성원의 통솔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상임연구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상임연구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5명이내의 연구원으로 임용한다.
- ④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단장의 임무 등)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과 관계국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업무의 수행과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및 복무를 지도 감독한다.

- ②단장은 도지사가 부여한 도시계획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제17조(임용 및 복무) 단장 및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등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관계기관 및 당해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